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0.3.31.공포, 2020.10.1.시행)됨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 주체 및 공표 결정방법, 행정응원의 절차 및 방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구체적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안 제14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한정됨을 명시

나. 위반사실 등 공표사항(안 제15조의3)

법률의 위임조항을 추가하고 공표사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을 삭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동일인인 경우 중복사항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다. 위반사실 등 공표 주체, 공표 결정 및 공표 방법(안 제15조의4)

1) 위반사실 등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문 실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사실 등 공표 결정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문 실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을 실시한 행정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표사항을 입력하도록 함

라. 위반사실 등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및 해임·해촉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노인복지나 장기요양에 관련 전문가가 더 많이 포함

되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며 기타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마. 행정응원의 절차 및 방법(안 제28조의4)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내용, 인력 편
성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통보하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행정절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안 별표3)

법률 개정으로 벌칙 부과 대상으로 변경된 법 제61조제2항제1호의 위
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말한다)의 성명.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37조의3제2항”을 “법 제37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청문을 실시한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청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제2항제1호 본문 중 “결정.”를 “결정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받은 청문결과를 고려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기관 인터넷”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지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사람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각각 1명 으로 한다.

제15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노인복지 또는 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

제15조의5제2항제3호 중 “사람 1명”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 1명”을 “공무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5조의5제2항제5호 중 “관”을 “공단 이사장 또는 관”으로, “사람 1명”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를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으로 한다.

제1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내용, 인력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신고하지 않거나”를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으로, “신고한”을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2) 중 “법 제61조제1항·제2항”을 “법 제61조제1항·제2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u>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u>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u> <u>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 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1. · 2. (생략) 3. <u>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u> <u>4.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u> <u>(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u>	<u>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u> <u>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u> <u>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 3제1항 또는 제2항-----</u> ----- -----. 1. · 2. (현행과 같음) 3. <u>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u> <u>(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말한다)의 성명.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u> <u><삭 제></u>

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의 성명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 법 제37조의3제
3항-----

② -----

---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후단
신설>

1.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이 청문에 출석한 경우: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 다만, 제1항 후단에 따
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청문 결과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
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
한다.

2.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

제2항------. 이 때 보
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장
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청문
을 실시한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청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결정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받은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 -----
--.

2.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

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나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기간 중 공표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 내용

3제1항 또는 제2항-----

--- 해당 기관 인터넷-----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 제3항에 따른 공표사항에 지체 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생략)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

-----.

⑥ -----

-----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
-----.

⑦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공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으로 한다. <단서 신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전문가 1명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 소속 4급 이상 공무
원 1명 <단서 신설>

5.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 소
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
람 1명

수·구청장-----
-----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각각 1명으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
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노인
복지 또는 법률 분야를 전공
한 사람

3. -----
-----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
----- 공무
원.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임
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보건
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5. 공단 이사장 또는 관-----
----- 사
람

③ ~ ⑦ (생략)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2. (생략)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③ ~ ⑦ (현행과 같음)

<삭제>

⑧ ----- 제7항까지에서 -----

-----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1. 2. (현행과 같음)

3.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생략)

<신설>

----- 않다고 -----

4. -----

----- 않은 -----

--

5.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내용, 인력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u>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u> <u>「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u> <u>에 따른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연 락 처	(044) 202 - 3497